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사후환경영향 조사시 대기질항목은?

과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대기질항목중 TSP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시 PM-10으로 변경해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그대로 TSP로 측정해야하는지요? PM-10으로 변경할 경우 별도 협의내용 변경을 수행해야하는지요?

**A**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후환경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초 환경영향평가협의시와는 달리 대기질 조사항목 중 TSP를 PM-1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Q 건축물의 용도별 우수발생량 산정은?

질의 1) OO학교기숙사신축 관련  
기숙사 1층은 급식소(학교의 모든 학생 사용)용도로 사용하고 2~4층은 학생기숙사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때 2~4층은 기숙사정원을 대상으로 200L/인으로 산정하지만 1층은 부대급식시설(30L/인)로 산정할 때 주거시설로 분류되는 기숙사의 정원을 제외한 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우수발생량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2) OO부대 병영생활관신축 관련  
병영생활관과 급식소를 별도로 신축하였을 경우 병영생활관은 군대숙소(200L/인)으로 산정하지만 급식소를

우수발생량 산정(병영생활관 정원으로 산정하여)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이 생긴 이유는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우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의 주석 6)에서 부대급식시설의 내용 중 주거시설과 공공용시설은 제외 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A** <질의 1에 대하여>  
환경부 고시 제2009-197호(건축물의 용도 별 우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별표 [분류 번호 1] '기숙사'에는 기숙사 인원이 이용하는 급식시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부대급식 시설이란 주 용도에 대한 부속용도로써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기타 일반인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용도로써 음식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대급식시설을 생활관 내 인원들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생활관원들만 사용할 목적이라면 별도의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수발생량 산정은 건축물의 실제용도 및 사용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총량제 관련 문의

저는 현재 총량제 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의 공무담당 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는 2종 사업장(BC)으로 총량제 관리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 중입니다. 에너지 원단위를 줄이고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그대로 BC에서 단가가 저렴한 LNG로 연료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저녹스버너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요?

총량관리의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의 “제14조 사업장설치의허가” 1항에 보면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변경하려는 자는… 이라는 사업장에서 저희는 배출량이 초과되지 않으니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귀하는 현재, 배출시설인 2종 사업장(BC)으로 총량제 관리의 대상이 되어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단위를 줄이고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그대로 BC에서 단가가 저렴한 LNG로 연료를 전환할 경우, LNG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배출량 총량의 저감을 위해서 방지시설인 저녹스 버너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건

당사는 선철주물주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도장 공정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에틸벤젠이 배출되어 자가 측정을 하여야 되는데 에틸벤젠의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에틸벤젠을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Q**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여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4조.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 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운반자만 변경되는 경우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장폐기물 변경신고 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A**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동일하고 단순히 운반 및 처리업소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